



C O N T E N T S

차 례

“총 6개 분야, 96개 시책”

I 지속성장을 위한 강원경제 기반조성 / 5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변경됩니다.	7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8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을 지원해드립니다.	9
4.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도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10
5.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11
6.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12
7. 청·장년 정규직 채용 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3
8.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14
9. 준·고령자 인턴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5
10.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16
11. 강원상품권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17
1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18
13.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19
14. 강원마트에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지원합니다.	20
15.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21
1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22
17. 강원무역센터가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23
18.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합니다.	24

II 나눔과 배려에 기초한 교육·복지 / 25

1. 평생교육으로 도민 행복 향상을 추구합니다.	27
2.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8
3. 강원학사(관악/도봉/춘천)에서 신입사생을 선발합니다.	29
4.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30
5.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31
6. 강원도형 예비자활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32
7.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창업모델을 육성합니다.	33
8. 「다함께 돌봄센터」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34
9.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35
10. 스스로 척척! 알아서 척척! 자립능력 길러보세요.	36
11.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합니다.	37
1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38
13.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됩니다.	39
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40
15.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41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42
17.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43
18.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44
19. 암생존자 통합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5
20.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46
21.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47

1.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51
2. 청년농업인 CEO 육성 및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52
3. 외국인 근로자 편익을 크게 개선합니다.	53
4.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확대됩니다.	54
5.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이 확대됩니다.	55
6.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56
7.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57
8. 학교급식지원사업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58
9.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59
10.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합니다.	60
11.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를 실시합니다.	61
12. 농업분야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62
13. 밭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63
14.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64
15. 불가사리 수매 단가가 상향됩니다.	65
16.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66
17.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67
18.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68
19.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69

1.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73
2.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74
3. 어르신들의 안전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75
4.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76
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77
6.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이 상향됩니다.	78
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범위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79
8.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80
9.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됩니다.	81
10. 어린이집 노후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 시 지원금을 드립니다.	82
1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미세먼지가 포함됩니다.	83
12.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84
13. 브롬산염(수돗물 수질기준)이 모든 수도시설에 적용됩니다.	85

1.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가전제품을 지원합니다.	89
2.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행복을 추구합니다.	90
3.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합니다.	91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92
5. 재활치료는 이제 재활의료기관에서 받으세요.	93
6. 마을기업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94
7. 도민 누구나 돈을 버는 모바일 에너지사업이 시행됩니다.	95
8. 강원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설치합니다.	96
9. 올림픽·패럴림픽 여행주간 ‘평창여행의 달’이 운영됩니다.	97
1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확대됩니다.	98
11.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99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03
2.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가 확대됩니다.	104
3.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105
4. 진료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106
5.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107
6.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108
7. 중·대규모 기업 이전, 신·증설 지원기준을 세분화합니다.	109
8. 중·대규모 창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110
9. 동물보호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111
10.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112
11.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113
1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이젠 쉽게 해결하세요!	114
1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115
1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116

I

지속성장을 위한 강원경제 기반조성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변경됩니다. / 7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8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을 지원해드립니다. / 9
4.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도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 10
5.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 11
6.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12
7. 청·장년 정규직 채용 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13
8.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 14
9. 준·고령자 인턴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15
10.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 16
11. 강원상품권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 17
1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18
13.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19
14. 강원마트에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지원합니다. / 20
15.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 21
1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 22
17. 강원무역센터가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23
18.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합니다. / 24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변경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249-3223)

-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식변화 및 매출증대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2.0」으로 개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주요 사업별 변경 내용입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선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사업 종료시장 중 성과, 보유역량, 고객만족도 등이 우수한 시장을 지정. 성과확산 및 시장 간 협업 등을 주도 <p>※ 광역시도별 2개소 이내 지정, 2018년 신규는 1개소만 지정</p>
문화관광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기반이 조성된 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접목, 대표상품, 디자인재생, 협업사업 등 특화요소 집중 발굴 <p>※ 글로벌명품, 지역선도, 직전년도 문화관광형 종료시장은 제외</p>
골목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폐지 → 특성화 기반조성으로 사업 변경 전통시장 3대 서비스 혁신(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 2대 역량강화(상인조직역량, 안전관리) 중점 추진

- 사업신청 : 시군 및 상인회 → 광역 시·도 →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8년 1월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249-2757)

-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도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변경사항	기존 (2017년)	확대 (2018년)
경영안정자금	일자리우수인증기업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한도 6억원이차보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한도 7억원이차보전 3.0%
특수목적자금	창업초기기업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한도 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한도 10억원
	최저임금 영향기업 '인건비' 목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대 5천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운수업, 수출기업 등
- 신청장소 : 기업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경영안정자금 : 1,200억 원(은행자금)
 - 운전자금(원자재, 인건비 등), 최고 8억원, 이차보전 2.5~3.5%, 최장 4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700억 원(은행자금)
 - 시설자금(공장신축, 부지매입 등), 최고 15억원, 이차보전 2%, 최장 9년
 - 특수목적자금 : 30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 및 시설자금, 최고 8억원, 고정금리 1.5%, 최장 5년
- * 수출, 창업초기, 기술혁신, 재해·재난, 지역산업영위, 고용창출우수, 산업단지입주기업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8년 1월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판로지원팀 (☎249-2754)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공공구매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좀 더 손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구매 온라인 쇼핑몰
 - 건설자재, 차량, PC, 가구, 의료기기, 전통식품, 여행상품 등
- 공공기관이 계약절차 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 종합쇼핑몰 입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달청 심사(신용, 제품, 가격 등) 후 입점
 - 강원도에서는 별도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1월)

■ 지원대상 기업수와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기업 : 10개 업체(기업 당 10개 품목 내외)
- 지원 대상기업 선정방법
 - 공고(2월 예정)를 통해 입점희망기업을 모집 후 신용등급, 매출규모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제도 이해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상위 10개 선정

■ 입점 시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사전 행정절차, 조달청 심사, 입점 후 사후관리까지 전문가 지원
 - 물품식별번호 발급, 제반서류 작성, 관련 교육, 1:1 현장 컨설팅 등

4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도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유통소비팀 (☎249-3214)

- 대형유통업체(이마트·롯데마트 전국지점)와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다획어종의 안정적인 판매 및 농·축·수산물의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상품 홍보는 물론 농어가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산품 판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대형마트 전국 지점대상 「강원 우수 특산물 특별판매」 행사 개최(연 4회)를 통해 도 특산품 판매
- 특산품은 수협, 농협 등 조합에 납품되는 상품을 선정 · 판매
※ 대형마트 업무협약 체결
 - (주)이마트('16. 10. 31.) 계절·시기별 수산물 특판 및 판로확대 추진
 - (주)롯데마트('16. 11. 7.) 농·축·수산물 판로지원 및 가공품 판로확대

■ 판매시기는 언제인가요?

업체별	시기	대상품목	특산품 판매 중계
롯데마트	상·하반기 7일 내외	농산: 산나물, 파프리카, 배추, 무 등 축산: 강원한우 수산: 방어회, 도루묵, 가자미 등	농협, 수협, 한우조합 등
이마트	상·하반기 7일 내외	수산: 도루묵, 오징어, 가자미 등	수협 등

※ 품목의 수급사정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연중

5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현안관리팀 (☎249-2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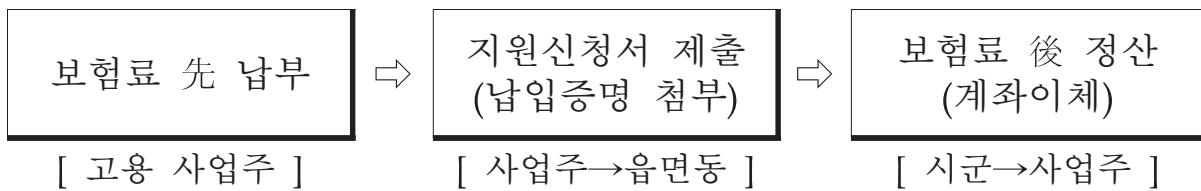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사업주
- 지원요건
 - 최저임금 120%(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월별 보험료 납부 후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주가 신청



- 先 납부(사업주) 後 지원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예정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최소화로 경영부담 완화
-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삶의 질 향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6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현안관리팀 (☎249-2956)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것만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사업주는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심공제란?

- 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및 소속 근로자
- 공제적립 : 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 및 시군 20), 5년간
-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퇴직) 시 *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공제운용 : 전문기관 위탁운영(공공기관 대행)
* 2017년 7월 시범도입으로 483명 가입완료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규모 250명(계획)* 실제 지원 : 48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규모 2,500명* 기존 가입자(483명) 포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심공제 청약 홈페이지('18년 구축 예정)를 통한 신청
 - 사업주 청약 ⇒ 근로자 청약 ⇒ 청약승인(도) 후 계약 체결
- ※ 세부신청 절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18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 언제 시행하나요?

- '17년 시범도입 결과를 반영하여 '18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7

청·장년 정규직 채용 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249-3452)

-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청·장년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에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란?

- 지원규모 : 417명
- 지원대상 :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 도내 업체
- 지원내용 : 도내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채용 시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청년 만15세~34세, 장년 만55세~64세
- 지원예산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500)
- 신청절차 :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참가업체 모집 공고 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 신청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신규 채용 범위 확대	▪ 최초 정규직 신규 채용자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에서 당해 신청연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포함
▪ 제재규정 완화	▪ 근로자 채용 포기 시 다음연도 1년간 지원배제	▪ 근로자 미채용 시 전년도 미채용률 반영하여 선발 시 감점 ▪ 승인 후 사업(기업)체에서 3개월 이내 채용이 없을 경우 포기로 간주
▪ 선발 가산점 항목 확대	▪ 일자리 창출 기여도(3점)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2점)	▪ 일자리 창출 기여도(5점)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5점)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3점) - 일·학습병행제, 준·고령자 기업체인턴제, 청년희망일자리버스원정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구직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로 청·장년 일자리 디딤돌 역할
- (구인기업) 도내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와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

8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현안관리팀 (☎249-2956)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기업을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도 함께 지원합니다.

■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 관련근거 :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대상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소재 기업
- 선정인증 : 19개 기업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대상 1개 기업, 우수기업 18개 기업

■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지원규모 : 7개 기업 (기업별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원)	▪ 지원규모 : 19개 기업 (기업별 고용환경개선자금 5천만원~1억원)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 일자리 업무 관련 부서에 신청
 - 사업주 신청 ⇒ 시장·군수 추천 ⇒ 심의위원회(도)에서 최종 인증

* '18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9

준·고령자 인턴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일자리육성팀 (☎249-2739)

- 준·고령자에게는 취업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턴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이란?

- 참여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세 이상 취업희망 준·고령자
 - * 고령자고용법(약칭) 제2조 : 준·고령자(50~54세), 고령자(55세이상)
- 참여기업 : 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내용 : 인턴채용 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 기업에 지원
- 참여시군 : 16개 시군(정선, 양양 제외)
- 참여방법 :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문의
 - 연초 시·군 홈페이지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공고 확인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16개 시·군 확대(정선, 양양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준·고령자 인턴사업 단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장년 55~64세- 내용 : 준·고령인턴 3개월 + 청·장년 정규직 6개월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 범위 : 혜택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포함- 숙박·음식업종 중 기술 습득을 요하는 직종 포함- 업체당 3명까지 확대 지원

10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일자리육성팀 (☎249-2739)

- 신입직원의 사고방식, 지식 등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직장내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사업이란?

- 사업기간 : '18. 1 ~ 12월(상·하반기)
- 참여대상 : 도내 중소기업 신규 직원 400명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외 집합교육
 - 신입직원 공통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 병행 실시(1박 2일)
- 참여방법 : '18년 1월 중 참여기업 수요조사 실시

■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교 육 내 용	기 대 효 과
1일차 (공통교육)	① 문제해결능력 ② 대인관계능력 ③ 자기개발능력(자기관리)	▶ 모든 직무환경에서 직장인에게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함양
2일차 (전문교육) *분야별 개별교육	① 영업(판매)분야 ② 생산(기능·기술)분야 ③ 사무·행정 분야 ④ 서비스분야	▶ 분야별 원리, 원칙, 법규, 개념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사고로 실무역량 강화 ▶ 사내 OJT교육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도내기업의 노동의 질 향상으로 생산성 강화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신입직원은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타 직종·직장인과의 지식, 경험 등 공유 가능

11

강원상품권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1·2팀 (☎249-3389, 3228)

- 지역자금의 역외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돈이 원활하게 순환하여 동네 상가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강원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 강원상품권(GangWon)이란?

- 종이상품권 형태로 3종류(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가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대행기관(농협)을 통하여 구매와 환전이 가능합니다.
- 유통기한이 없으며,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이 대폭 적용되어 안전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인(기관, 단체 등)에 한하여 현금 외 법인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개인 구매자를 위하여 할인제도를 운영합니다.(5% 내외, 월 30만원 한도)
- 사용점이 늘어나 사용이 편리해집니다.(1만5천개 → 2만개 이상, 업종확대)
- 전자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 강원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 강원도 내 모든 사용점(사용점이 아니라도 상품권을 받아주는 도내 소재 사업체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등은 제외 - 음식점, 주유소, 동네슈퍼·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골프장 등

■ 사용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http://gwgc.gwd.go.kr>),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원상품권 홈페이지(PC, 휴대폰) '사용점 신청하기'
 - 오프라인: '사용점 신청서' 작성 ⇒ 팩스(249-3409) 전송
※ 신청서는 '시·군청, 읍·면·동센터, 농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용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상품권을 받고 환전 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1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249-3224)

-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이란?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과 자리기반 조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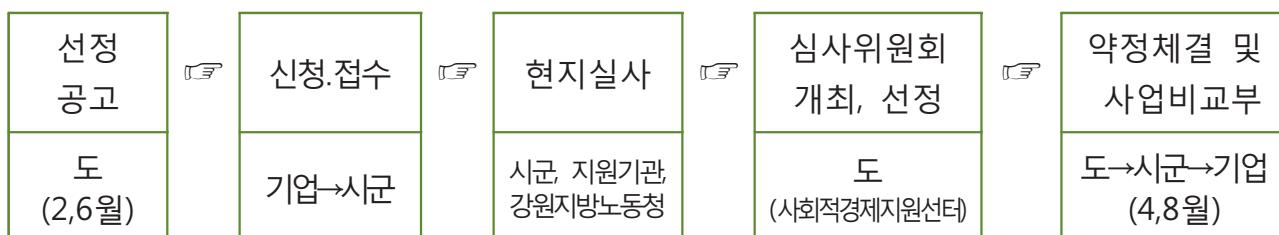
■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
- 지원절차 : 공모(도) → 심사선정(도) → 약정체결(시군) → 지원금 지급(시군)
- 사업비 : 2,551백만원(국비 1,786, 도비 255, 시군비 510)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사업비 : 2,118백만원	▪ 사업비 : 2,551백만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3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249-3227)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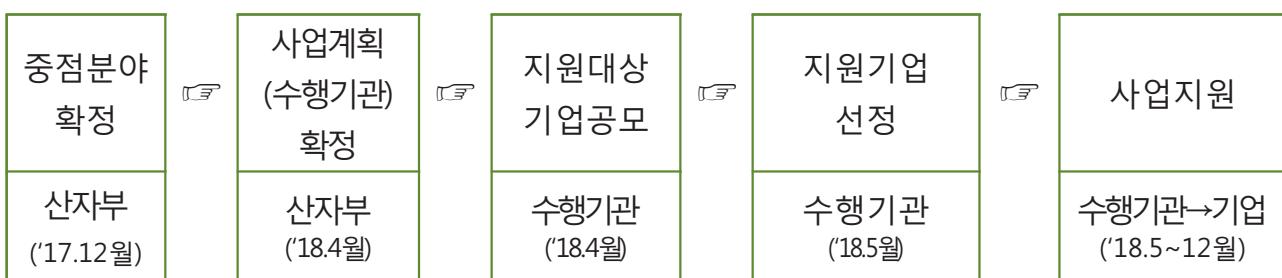
■ 지원목적은?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의 혁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는 R&D, 홍보·마케팅, 제품화,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 지원분야 : 지역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지원대상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R&D)지역혁신기관, (비R&D)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 사업비 : 886백만원(국비 620, 도비 266)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4

강원마트에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팀 (☎249-2497)

- 우수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강원마트에서 입문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 강원마트란?

- 운영목적 : 도내 우수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상품 위탁 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 증대
- 운영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강원마트에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품성 있는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의 쇼핑몰 구축 또는 위탁판매
- 입점 상품으로 기획전, 특판행사 추진 등 홍보마케팅 지원
- 유명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11번가, 우체국)과 연계 판매 지원
- 전자상거래 각 분야(디자인, 유통판매, 상품 콘텐츠 등) 컨설팅 지원
- 쇼핑몰 운영자 시스템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 상품 콘텐츠(모바일 겸용) 제작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우수한 상품이 있지만 판로 개척이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쉽게 온라인에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유통지원팀 (033-749-3315)

15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정보산업과 ICT융합팀 (☎249-2188)

- 도내 우수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을 발굴하여 연구 개발 및 제품 상용화 등 제품 사업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 ‘ICT융합’ 이란?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

- ICT가 타 산업의 제품, 서비스, 공정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제품·서비스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이루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 교통, 흄, 헬스, 자동차 등 기존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기존 산업 혁신 등 새로운 개념의 결과물을 제작

■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강원도 소재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 등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200, 시군비200, 기업자부담100)

- ※ 지원부담 비율 = 도비 40% : 시군비 40% : 기업자부담 20%이상

● 지원규모 : 2개 분야 / 10개 기업

구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5개 기업)	소요비용의 80%까지 (최대 2,000만원)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 플랫폼, 데이터 기술 개발
제품 고도화 (5개 기업)	소요비용의 80%까지 (최대 6,000만원)	■ 개발 제품 품질 고도화 ■ 시제품 성능 평가 및 인증지원 등

● 사업분야 : 의료·복지, 관광·스포츠, 농축수산업 등 ICT융합 제품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033-248-7913)

● 선정절차 : 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기업의 지원 적격성,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의 매칭도 등 종합고려)

1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249-3723)

- 도내 이전기업과 대학 등 교육기관을 연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내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전기업 채용박람회는 어떤 사업인가요?

- 장 소 : 추후 확정
- 운 영 : 박람회장 내 참여기업별 개별부스 운영 및 취업상담
- 세부내용 : 채용설명회, 기업 취업정보 제공, 부대 행사 등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시·군, 도내 대학 등

■ 어떻게 참여하나요?

- 구직자 : 신분증,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 지참 후 행사 당일 참여
- 기 업 :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또는 해당 시·군에 채용 계획 및 참가신청서 제출

※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41개 기업) : 기업이전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도내 이전기업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내 청소년 및 청장년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 도내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하여 이전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조기정착을 지원합니다.

■ 언제 개최하나요? 2018년 중 (추후 확정)

17

강원무역센터가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중국통상과 수출마케팅팀 (☎249-2092)

- 강원무역센터는 강원도 기업의 수출 역량 배양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수출 전략상품 개발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수출 희망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강원무역센터란?

- 강원수출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민간 전문기업과 협조해 설립한 수출 전문 컨설팅 조직입니다.

■ 강원무역센터는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오프라인 수출(무역)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과정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오프라인 매장 발굴 및 도내 제품 입점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온라인 마켓(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라자다 등)에 도내 제품 리스팅 및 프로모션을 추진합니다.

※ 2018년에는 강원무역센터 수출컨설턴트 인력을 확충하여 수출 영세업체 전담으로 배정, 원스톱 컨설팅 지원으로 어렵게 생각하던 수출시장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강원무역센터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수출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수출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 수출판로가 막막했던 기업은 새로운 온·오프라인 수출 플랫폼을 만나 기업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강원무역센터 조오현 팀장(070-4468-1838), 전용진 팀장(070-4468-1835)

18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중국통상과 수출지원팀 (☎249-3046)

- 수출제품 해외규격 인증제도 강화, 외국 현지 기업과의 상표·브랜드 경쟁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도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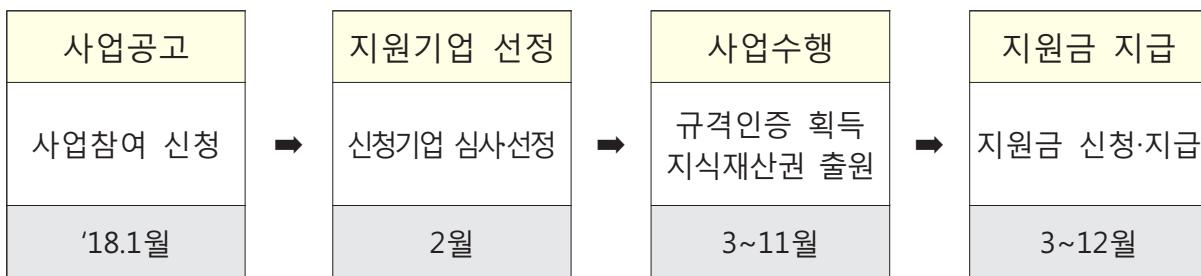
- 지원규모 : 60개 기업
- 지원예산 : 4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및 공장)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분야	지원건수	지원한도액	보조율
규격 인증	307개 해외규격인증	3건 이내	8백만원	
지식재산권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2건 이내	4백만원	80%

※ 규격인증의 경우 기존 인증 변경·갱신도 포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식재산센터(원주)
- 지원절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II 나눔과 배려에 기초한 교육복지

1. 평생교육으로 도민 행복 향상을 추구합니다. / 27
2.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28
3. 강원학사(관악/도봉/춘천)에서 신입사생을 선발합니다. / 29
4.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 30
5.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31
6. 강원도형 예비자활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 32
7.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창업모델을 육성합니다. / 33
8. 「다함께 돌봄센터」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 34
9.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35
10. 스스로 척척! 알아서 척척! 자립능력 길러보세요. / 36
11.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합니다. / 37
1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 38
13.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됩니다. / 39
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 40
15.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41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 42
17.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43
18.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44
19.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45
20.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 46
21.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47

1

평생교육으로 도민 행복 향상을 추구합니다.

[자체사업]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249-2299)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발전기반 조성, 삶과 하나되는 학습문화 조성을 통해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평생교육이란?

-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시군, 교육청, 대학 간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및 지원
- 교육기관 사업지원 및 평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도내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학습문화 확산 홍보

■ 도민에게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합니다.

-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 「이룸」 : www.e-room.or.kr 내 온라인 강좌 메뉴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2018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무엇인가요?

지속추진 사업	
■ 2018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성인문해교육 운영 활성화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 맞춤형 평생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 강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 「이룸」 운영
■ 평생교육 전문가 육성(포럼, 연수)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	■ 인문도시 지원사업(대학협력사업)
신규추진 사업	
■ 시·군 평생교육 균형발전 촉진(2개 시·군 선정 및 집중 지원)	
■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시·군별 컨설팅, 애로사항 청취)	
■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강좌 플랫폼 운영, 평생교육 모디슈머 양성 및 활동지원	

2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교육법무과 대학협력팀 (☎ 249-3702)

-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도내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장학금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간 : 2016년 ~ 2018년(연2회/1·2학기)
- 지원예산 : 30억 원/연간 ※ 학기당 15억 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 원/연간 ※ 학기당 50만 원 한도
 - 매 학기분 총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 중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소득 하한분위(5분위~기초)는 변동될 수 있음
 - 도내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 출신 검정고시자(확인 가능한 경우)
 -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편입생(확인 가능한 경우)
- 지급시기 : 매 학기말 지급('18. 6월/12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 도내 대학에는 장학금 확보액이 증가되므로 국가장학금(II 유형)이 추가 배정되어 학생 및 대학에게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18년 1월(‘18년 1학기분부터)

3

강원학사(관악/도봉/춘천)에서 신입사생을 선발합니다.

[자체사업]

교육법무과 대학협력팀 (☎249-2461)

- 서울 및 춘천에 유학 중인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의 안정된 주거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관악/도봉학사, 춘천의 춘천학사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관악학사	도봉학사	춘천학사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 정원	▪ 275명(남135, 여140) ▪ 2인 1실	▪ 204명(남92, 여112) ▪ 4인 1실	▪ 37명(여) ▪ 3~4인 1실
▪ 부 담 금	▪ 월 16만원(3식 제공)	▪ 월 16만원(3식 제공)	▪ 월 16만원(3식 제공)
▪ 주요대학	▪ 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등	▪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 강원대, 한림대 등

강원학사 사생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자격 : 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문대학, 종합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춘천학사 : 춘천시 소재의 전문대학, 종합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이면서
본인이 강원도 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본인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통학이 6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 강원학사의 수혜인원이 연 312명에서 516명으로 확대됩니다.

언제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2018년 1월

- 강원학사 선발요강은 2018년 1월에 확정 공고됩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 및 강원도내 시·군 홈페이지 게시)

4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자원개발과 기획조정팀 (☎249-3275)

-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사업 공고(매년 3월~4월) 후 대상자가 해당 시·군·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 시군에서는 지원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道로 추천

■ 지원자격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등록 등재 및 실 거주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서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이상)과 상관없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취득
- 한 학기 등록금 총액 범위에서 여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인정

■ 지원내용은?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구 분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신입생	300만원 (1학기)	400만원 (1학기)
재학생	200만원 (학기당)	300만원 (학기당)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5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249-2419)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이란?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탈빈곤·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축으로 인한 가치분소득 감소없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청년

■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생계수급청년(15세~34세)
- 지원방식
 -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매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매월 평균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생계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 시행시기 : 2018년 4월(예정)

■ 기존사업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희망키움 통장 I	본인저축(본인기여 有)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희망 키움통장	본인저축(본인기여 無) + 근로소득장려금

6

강원도형 예비자활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249-2593)

- 도내 6개월 이내 자활기업으로 설립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중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단을 발굴·인증하여 대표 자활기업으로 육성 지원합니다.

■ 강원도형 예비자활기업 육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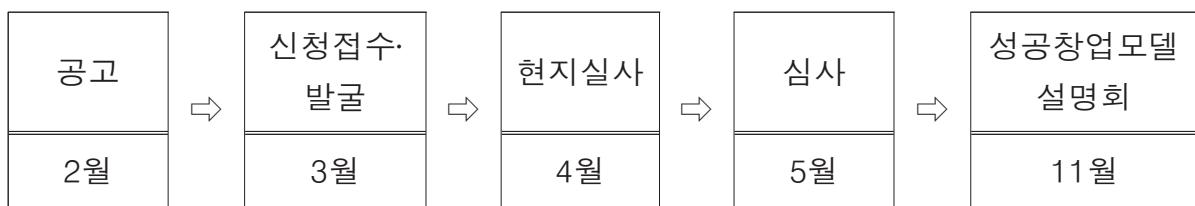
- 도내 6개월 이내 자활기업으로 설립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중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단을 발굴·인증하여 대표 자활기업으로 육성 지원
 - * 자활근로사업단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돋는 일자리 제공형태이고, 평균 3년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기업으로 설립됨

■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6개월 이내 자활기업으로 설립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 선정규모 : 3개 사업단(일자리창출형, 지역사회공헌형, 재정일자리형)
- 지원내용
 - 설립지원 : 자활기업 설립 실무·기본교육 및 설립지원
 - 맞춤형 경영지원 : 경영컨설팅, 시장개척 등
- 시행시기 : 2018년 2월(예정)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및 문의 : 강원도광역자활센터(033-244-0290, 0284)



7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창업모델을 육성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249-2593)

- 도내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창업모델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새로운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창업모델 육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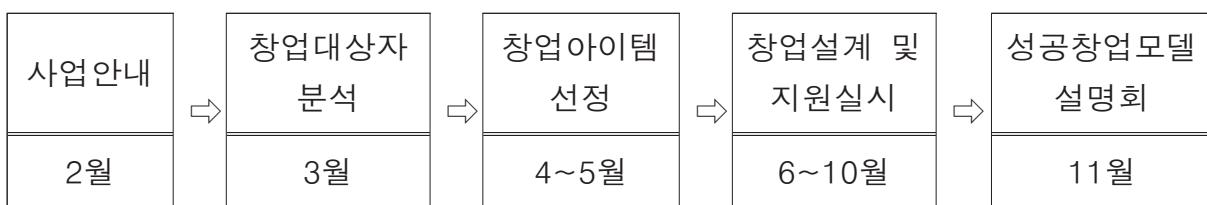
-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욕구와 역량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환경에 적합한 창업과 직무매뉴얼을 개발, 인·허가 조건 등 창업과정을 지원하여 성공창업모델을 육성

■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 지원유형 : 규모형 일자리창출 창업모델, 특수계층(다문화, 여성 등) 맞춤형 창업모델, 사회서비스 제공형 창업모델
- 지원내용
 - 유형별 창업매뉴얼 개발지원
 - 맞춤형 창업지원 : 창업컨설팅, 인·허가지원, 상품(서비스)품질 경쟁력 강화 등
 - * 소액 자금대출지원사업(운영자금, 임대보증금)의 우선지원혜택 제공
- 시행시기 : 2018년 2월(예정)

■ 어떻게 지원하나요?

- 지원방법 : 강원도 내 17개 시·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
- 지원 및 문의기관 : 강원도광역자활센터(033-244-0290, 0284)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 249-2438)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시·긴급돌봄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됩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란?**

-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 **어떻게 운영되나요?**

- (운영대상)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내용)
 - 출근 전 시간(6~8시), 초등 방과 후(17~22시)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이용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그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형태의 돌봄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군 공모 및 선정(1개소) : 2018년 2월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2018년 3월(예정)

9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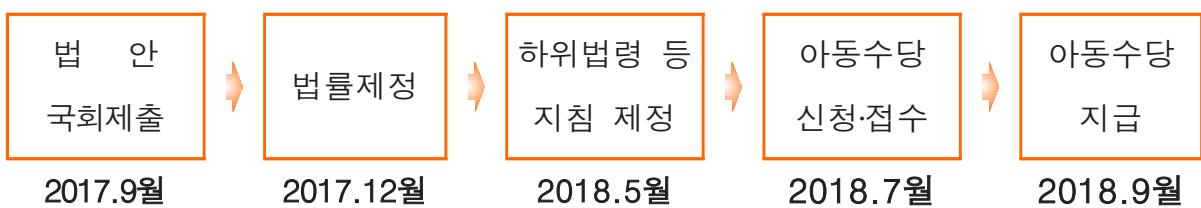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 249-2521)

-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대상) 6세 미만 아동(72개월 미만)
- (지급금액) 매월 10만원
- (지급신청)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① 시장·군수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지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정지)
 - ①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②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

■ 주요 추진계획(안)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9월

10

스스로 척척! 알아서 척척! 자립능력 길러보세요.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 249-2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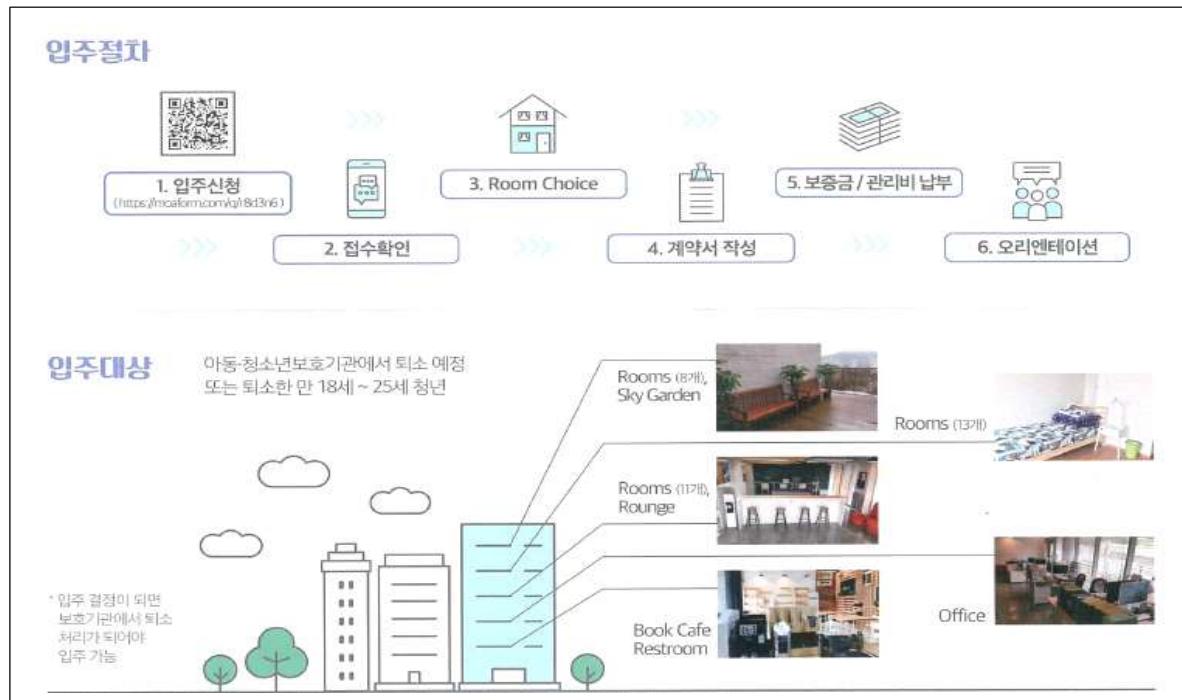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에서 자립생활단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1인 1실 주거공간 제공과 함께 취업, 진로, 경제관념 등 다양한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자립준비 계획을 비롯해 퇴소 아동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

■ 입주절차 및 입주대상

- (지원내용) 1인 1실 주거공간, 취업, 진로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2018년 1월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http://moaform.com/q/r8d3n6>)

11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 249-2240)

-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합니다.

■ 열린어린이집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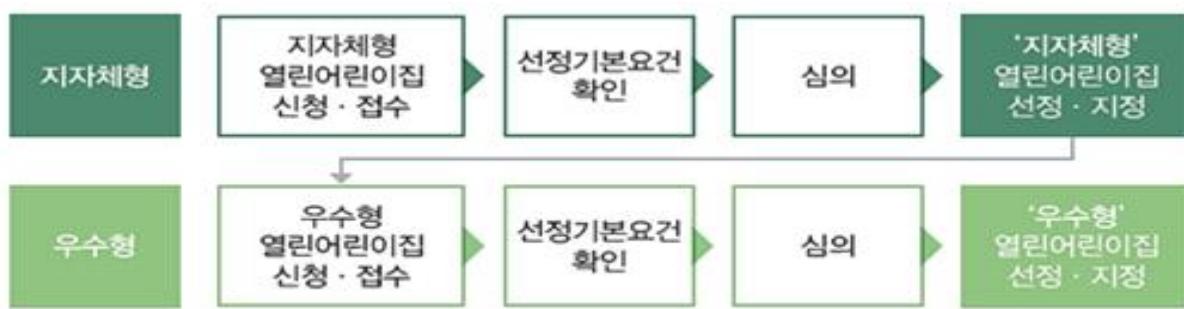
-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등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보건복지부 우수 열린어린이집 10개소	▪ 보건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3개소 강원도 자체형 열린어린이집 89개소

■ 열린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열린어린이집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1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 249-2676)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확대 배치하여, 다양한 경로당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더욱 풍성한 노인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란?

-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하는 전담인력

■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시·군별 1명 배치 : 18명	▪ 시·군 경로당 수에 따라 차등지원 – 29명(증 11명)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추가 배치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13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 249-2511)

-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법」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노후생활을 돋고 연금 혜택을 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1인당 최대 206,050원 / 월	▪ 1인당 최대 250,000원 / 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 상담 후 신청

■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2018년 4월(예정)

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665)

- 장애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기초급여) 1인당 최대 206,050원/월	▪ (기초급여) 1인당 최대 250,000원/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2018년 4월(예정)

15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249-2513)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연령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개선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만13세 미만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지원금액 : 월 1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만14세 미만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지원금액 : 월 1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정 만13세 미만 아동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지원금액 : 월 17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정 만13세 미만 아동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지원금액 : 월 1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지원금액 : 2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지원금액 : 390천원(동복 1벌, 하복 2벌) - 도 교육청 발표 학교주관 구입단가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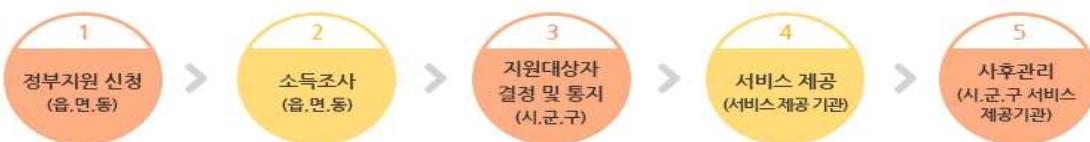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249-2524)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 합니다.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시간당 6,500원	▪ 시간당 7,530원
▪ 시간제 가형 연480시간	▪ 시간제 가형 연600시간 ('17년 7월부터 시행)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안내

서비스 유형	이용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A형	B형
시간제 (7,530원)	A형 : '11.1.1 이후 출생 B형 : '10.12.31.이전 출생	· 가형 : 연 600시간 · 나, 디형 : 연 480시간	· 가형 : 6,024원 · 나형 : 3,765원 · 디형 : 2,259원	가형 5,271원
종 합 형 (9,789원)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 이용가구	시간제와 동일	시간제와 동일	시간제와 동일
영아종일제 (7,530원)	만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200시간 이하	가 5,648원, 나 4,142원, 다 2,636원	
보육교사형 (8,283원)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월 120~20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와 동일	

* 구분기준 : 중위소득 / 가형(60% 이하), 나형(85% 이하), 디형(120% 이하), 라형(120% 초과)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7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 (☎ 249-2671)

- 2018년 9월부터 면역력 향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계절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59개월 이하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12세 이하

■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시기 : 매년 9월 ~ 다음해 4월
- 접종횟수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1회 접종
 - 생후 6개월 ~ 만 8세 이하 :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위탁의료기관 확인 가능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어린이 건강보호,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 부담 감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9월

확대 예상인원 : 약 9만명 / 소요예산 : 2,060백만원(국비 1,030, 도비 350, 시·군비 680)

18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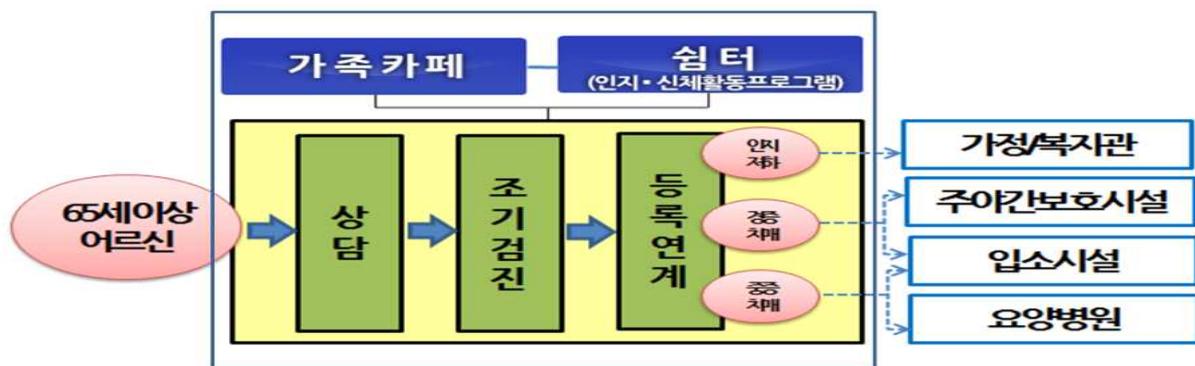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질병관리팀 (☎ 249-2667)

- 지역 격차 없는 평등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대폭 기능 확대하여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안심센터란?

- 치매 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복지 지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군별 1개소 설치)



■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강화) 1:1 맞춤형 상담, 조기검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17.12월 개통)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연속적으로 관리

-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 (신설) 상담 이후 치매지원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를 위해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상담 등 제공(3개월 기본, 필요시 심의 하에 1회 연장)

- 치매가족 지원 및 카페 운영

- (신설) 치매가족의 정보교환 및 휴식, 자조모임 등을 위한 공간 구성·운영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 우선(임시) 개소 : 보건소 내외 공간 활용 운영(2017. 12월 ~)
- 정식 개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공 이후(~2018년)

19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 249-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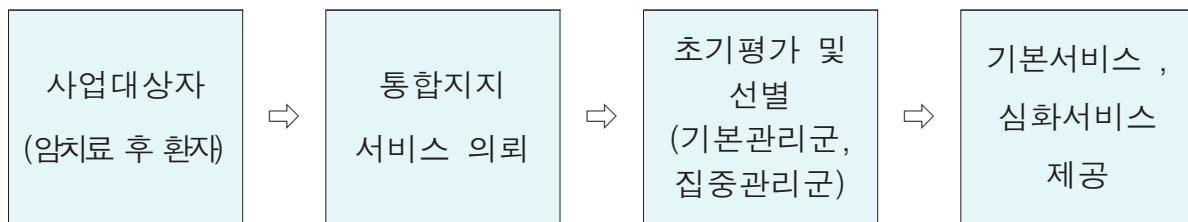
- 암생존자에게 의료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주도로 교육, 상담,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추진배경 : 암생존자가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암 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초기치료를 마친 암환자
- 사업내용 : 암 경험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연계기관 등이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함
- 비용 : 참가 및 상담 무료

■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서비스 제공기관 : 강원지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강원대병원)
- (주소)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3동 17-1)
- 제공과정



- 제공내용

- 통합지지서비스 : 각종 서비스 연계, 상담, 모니터링 및 위험도 평가
- 프로그램 : 원예, 미술, 영양(요리체험), 운동, 가족모임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20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 249-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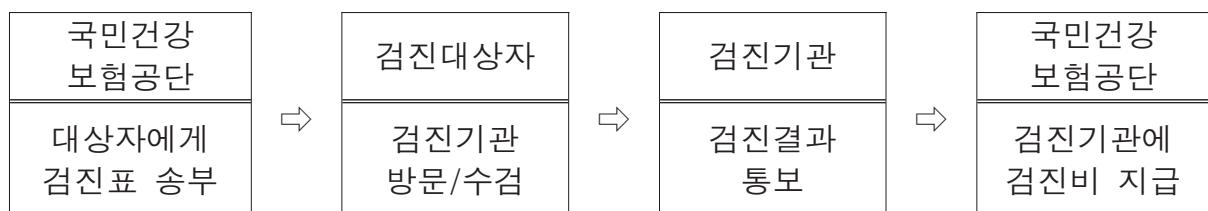
-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기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 암검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월 보험료 직장 87천원 이하 / 지역 9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층 5대암 검진비 지원

암종별	위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 암	대장암
나 이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2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50세 이상
검진주기	2년	2년	2년	6개월	1년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 예정자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 수검 예정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함

21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 249-2394)

- 24시간 안전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고위험 임산부는 누가 해당 되나요?

- 산부인과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임산부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로 판정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 선별검사란?

- 임신주기별(1차~4차)로 제공되는 600여개 항목의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 임신 위험인자의 포함 여부를 전문의가 진단

■ 받게 되는 지원 내용은?

- 대상지역 :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보건소 방문·신청(연중)

- 지원내용

- 자가관리 의료기기 무료대여, 모바일 앱 건강관리, 24시간 Hot-line 응급 상담,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비, 구급차 및 산모 안심택시 운임 지원, 임신 축하 베이비박스 등

- 무료 대여 의료기기

- 모든 임산부 : 태아심박동 측정기, 입덧완화밴드
 - 고위험 임산부 : 태아심박동 측정기, 입덧완화밴드,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 * 2018년도 유축기 대여 예정

■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 고위험 임신 위험인자의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

III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

- | | |
|---------------------------------|------|
| 1.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 51 |
| 2. 청년농업인 CEO 육성 및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 / 52 |
| 3. 외국인 근로자 편익을 크게 개선합니다. | / 53 |
| 4.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확대됩니다. | / 54 |
| 5.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이 확대됩니다. | / 55 |
| 6.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 56 |
| 7.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 / 57 |
| 8. 학교급식지원사업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 58 |
| 9.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 59 |
| 10.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합니다. | / 60 |
| 11.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를 실시합니다. | / 61 |
| 12. 농업분야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 62 |
| 13. 밭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 / 63 |
| 14.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 / 64 |
| 15. 불가사리 수매 단가가 상향됩니다. | / 65 |
| 16.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 / 66 |
| 17.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 67 |
| 18.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 68 |
| 19.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 69 |

1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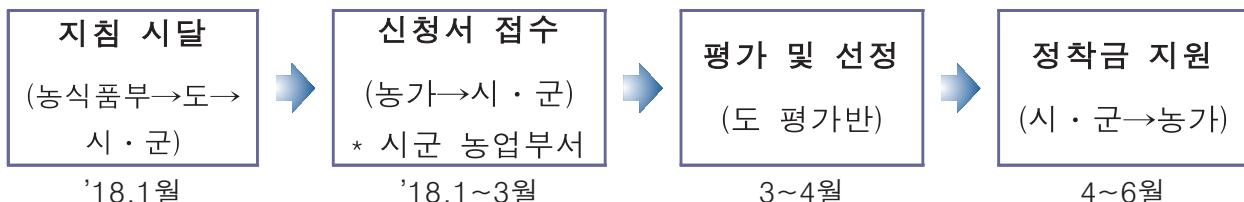
농정과 농촌인력팀 (☎249-2706)

- 청년층이 활발하게 영농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이란?

- 지원금액 : 1백만원(월) * 지원비율 : 국비(70%), 지방비(30%)
- 지원기간 : 3년간
 - * (1년차) 1백만원, (2~3년차)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 시 차감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 지원내용 : 영농자금 및 일반기계자금 모두 활용가능
 - * 전용카드 발급(예정)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조건(의무사항)은 있나요?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농 의무교육 이수
- 농업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전업적 영농유지 및 경영 장부 기록 등

■ 도 자체(신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2018년 신규)
 - 지원대상 : 만 18 ~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법인에 취업한 청년농업인 생활안정자금(3백만원/연)
창업농 농지 임차비 지원(최대 10백만원)

2

청년농업인 CEO 육성 및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248-6116)

- 지식 농업경영 기반확립 및 차별화된 경쟁력 배양으로 영농 조기정착 및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21C 선도 청년농업 CEO를 육성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사업목적 : 농업전문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CEO 육성
- 사업규모 : 16개소, 470백만원(국비 112.5, 도비 86, 시군비 246.5, 자부담 25)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4-H 회원 및 청년농업인

■ 도입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내 용
▪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 시군 청년4-H회원사업규모 : 6개소, 1억2천만원(2천만원/개소) ※ 도비 30%사업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기초시설, 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추진절차 : 시군별 대상 선정추진
▪ 미래 선도농업인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 철원군 청년4-H회원사업규모 : 5개소 1억원(2천만원/개소) ※ 도비 50%사업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전략작목 중심 시설·생산·가공 등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 만 18세~39세 이하 청년농업인(사업년도 기준)사업규모 : 5개소 2억5천만원(5천만원/개소) ※ 국비 45%, 자부담 10%사업내용 : 5개유형(ICT, 신기술,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개발,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및 기반조성, 기술교육 등- 시제품·CI·브랜드개발, 역량개발교육(마케팅, 전문기술 등)추진절차 : 자율형 사업공모(사업전년도, 서류·발표심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공고(전년도) → 선정심사 → 교육·계획보완 → 사업수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8년 1월

3

외국인 근로자 편의를 크게 개선합니다.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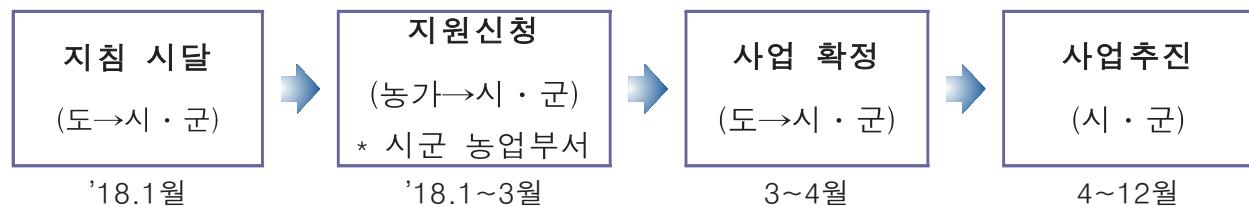
농정과 농촌인력팀 (☎249-2706)

-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보호는 물론 농번기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지원금액 : 30백만원(시군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근로자 안전재해보험, 기초 환경개선 등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 환경개선은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

- 외국인 숙박시설(도배, 장판, 주방, 욕실, 화장실 등) 개선
- 출입문 잠금장치 개선,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구입 지원
- 기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편의개선 사업 등

■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 2018년 3월부터

4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확대됩니다.

[자체사업]

농정과 농촌인력팀 (☎249-2612)

- 농작업·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생활 복지바우처와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부문의 혜택제공으로 영농의 육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 분	기 존 (2017년)	확 대 (2018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단가 10만원▪ 1가구당 1카드 제한▪ 면적(5ha미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단가 12만원(2만원 증액)▪ 1가구당 1카드 제한 폐지▪ 면적 제한 폐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단가 50천원(1일)▪ 지원일수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단가 61천원(11천원 증액)▪ 지원일수 90일로 변경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8년 1월부터

5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축산정책팀 (☎ 249-2652)

- 축산업은 고성장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영양에 기여하였으나, 밀집 사육으로 인해 가축질병 빈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국민 불신 초래

■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축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육면적 확대 : (기존) $0.05\text{m}^2/\text{수}$ → (변경) $0.075\text{m}^2/\text{수}$
- 케이지 설치기준 : 9단 이하로 설치, 폭 1.2m 이상 복도 확보
 - 단, 3단마다 복도를 설치하는 등 살처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9단 이상 설치 가능

내 용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산란계 사육면적	▪ 0.05m^2	▪ 0.075m^2
▪ 케이지 설치기준	▪ 기준 없음	▪ 9단 이하, 복도 폭 1.2m 이상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산란계 밀집사육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후처리 용이
- 사육 및 위생여건 개선으로 계란 생산단계 식품 안전성 확보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17. 12. 1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8. 2. 공포 예정

6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축산정책팀 (☎249-2652)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육면적이 $10m^2$ 미만 소규모 가금류 농장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 포함
-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도 가축사육업 등록

내 용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 사육면적 $10m^2$ 이상	▪ 사육면적 $10m^2$ 이상 ▪ 사육면적 $10m^2$ 미만의 영리 목적 사육시설(신설)
▪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가축사육업 등록	▪ 해당조항 없음	▪ 가축사육업 등록(신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효율적 예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17. 12. 1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8. 2. 공포 예정

7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원예과 농식품산업팀 (☎249-2622)

-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유통차단과 국내 농산물의 등록 농약 사용 의무화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괄 0.01ppm을 적용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 7,600여개 설정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 시행(2016.12.31.) : 수입량이 많은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키위 등)를 대상 우선 적용
- 2차 시행(2018. 12월) :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

■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 적용

농산물	현 행	개 정
콩	[코덱스 기준 적용] ▶ 코덱스 : 20ppm, 한국: 미설정	20ppm 적용 0.01ppm 적용
유자	[국내 유사농산물 적용: 감귤 0.5ppm] ▶ 코덱스, 한국: 미설정	0.5ppm 적용 0.01ppm 적용
배추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0.05ppm] ▶ 코덱스, 한국: 미설정	0.05ppm 적용 0.01ppm 적용

■ 농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추천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약별 등록된 작목에만 사용하고 사용 시기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8

학교급식지원사업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농산물마케팅팀 (☎249-2629)

-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과 농가소득 향상
-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및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에 기여

■ 친환경 학교급식

- 지원대상: 초, 중, 고(585교 151,890명)
- 사업내용: 학기 중 중식(식품비) 지원
- 사업비: 58,65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교육청 20%)

■ 친환경(우수) 식재료 구입

-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1,009교 185,420명)
- 지원단가: 1인 1식 170원(유) / 1인 1식 270원(초, 중, 고, 특수)
- 지원품목: 친환경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한우, 돼지고기, 계란
- 사업비: 8,915백만원(도 25%, 시군 25%, 교육청 50%)

■ 변경사항

사업명	기존 (2017년)	변경 (2018년)
▪ 친환경학교급식	▪ 초, 중학교	▪ 초, 중, 고등학교
▪ 친환경(우수) 식재료	▪ 1인 1식 170원	▪ 1인 1식 270원

■ 기대효과

- 학부모 부담경감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및 지역생산 농산물 지역 내 순환체계 구축

9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친환경농업팀 (☎249-3561)

-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소득 차이,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품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개정이유

- 현재 논·밭, 인증종류별(유기·무농약)로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품목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에 따른 여건 반영하여 개선
 - 친환경농가의 품목별·인증별 소득·생산비 조사를 통한 단가 현실화

■ 신청방법과 지원한도액 기준은?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18. 3. 1. ~ 3. 31.
 -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 ~ 5.0ha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ha당 지원 단가 상향조정

구 분	기준(2017년)		변경(2018년)			비 고 (지급기간)
	논	밭	논	밭	과 수	
유 기 농산물	60	120	70	130	140	5년
무농약 농산물	40	100	50	110	120	3년
유기지속 직 불	30	60	35	65	70	3년 → 무기한

10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식량산업팀 (☎249-3556)

-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합니다.
-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 시 소득차액을 지원하여 쌀 생산 조정효과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 * '18~'19년 한시적 추진

■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무엇인가요?

- 사업량: 1,968ha
- 사업비: 6,691백만원
- 지원 단가: 340만원/ha당
- 사업내용: '17년 벼 재배농지에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액 지급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타작물 수급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작물
 - * 가능품목: 사료작물, 콩, 팥, 메밀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17. 12월 ~ '2018. 1월 중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콩·사료작물 등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11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를 실시합니다.

[자체사업]

농업기반과 식량산업팀 (☎249-3556)

- 쌀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논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 사업은 무엇인가요?

- 사업량: 28,500ha
- 사업비: 2,850백만원
- 지원 단가: 10만원/ha당
- 사업대상: 도내 논농업 종사 농업인(쌀소득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
- 사업내용: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금) 지방비 추가지원
- 지원한도: 지원 상한 5ha, 지원 하한 1,000m² 미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증가로 농가경영안정과 쌀자급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12

농업분야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농업기반과 농산경영팀 (☎ 249-3567)

-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약방제용 드론 임대지원과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드론 활성화를 위해 농약방제용 드론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활용
 - 드론기체 보급: 10대

* 사업대상: 도내 10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인제)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 추진으로 드론 조종 국가자격 취득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농약방제용 드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 관행적 인력방제로 인한 농약중독 예방 등 사전차단
- 농업인 교육 및 홍보확대로 농업분야 드론산업 육성 지원

■ 어떻게 추진되나요?

-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드론운항 절차, 장비이동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탱크용량 10ℓ 규모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13

밭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자체사업]

농업기반과 농산경영팀 (☎249-3567)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정부지원 직불금의 경우, 밭농업보다는 논농업의 지원 비중이 높아 밭농업 재배농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로 직불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급상한 : 농업인 1인당 밭면적 40,000㎡ 까지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직불금 지원 단가 : ha당 5만원 지급	▪ 직불금 지원 단가 : ha당 1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에서 지원하는 밭농업 ·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를 농업인 농지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제출
 - 정부 지원 사업신청서로 갈음하여 시군별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지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4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249-3404)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통해 주인을 잃은 유실·유기동물의 가족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

■ “유실·유기동물” 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뜻하며, 지자체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란?

- 사업의의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규모 : 1,490마리
- 지원기준 : 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9%, 시군 21%,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입양비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분양 활성화
- 사전 검사 및 질병 예방접종을 통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5

불가사리 수매 단가가 상향됩니다.

[자체사업]

수산정책과 수산개발팀 (☎ 660-8336)

- 연안어장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수매 단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함으로써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서식하는 정착성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1998 ~ 2017년까지 6,124톤 수매

■ 어떻게 개선되나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조업 중 인양(어선어업) 단가는 kg당 1,200원	▪ 조업 중 인양(어선어업) 단가는 kg당 1,300원
▪ 수중 내 직접인양(나짐, 관리선) 단가는 kg당 1,400원	▪ 수중 내 직접인양(나짐, 관리선) 단가는 kg당 1,500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연안해역 불가사리(해적생물) 수매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어업인의 사업 참여의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구제사업 실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6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어업진흥과 어업지원팀 (☎ 660-8352)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사업 중 어업인의 어업여건과 환경에 맞게 충족될 수 있도록 품목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및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채낚기 어선의 조업능률 향상과 어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종 어로 장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근 거 : 「수산업법」 제86조,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강원도 해양수산발전조례」 제5조(보조대상사업)

■ 어떻게 바뀌나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5종)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즈,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씨양카)	▪ 7종)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즈,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씨양카), <u>물돛 양묘기</u> , 냉장기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오징어 자원 감소로 어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품목 확대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활동을 도모하고 한·중 FTA 등에 대응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2018년 1월 1일

17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248-6765)

- 매년 갈수기 댐·호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되어 조업을 못하는 전업어가에 생계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매년 갈수기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일부지역 어업인들 조업구역 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내수면어업 외 소득원을 제공하고 자 어장 환경을 개선하는 생계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 2018년도에는 댐·호 일부지역 어장 환경 개선(생계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8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갈수기 댐·호 어업인들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생계형 일자리 제공 (어장 환경 개선 참여)으로 일시적으로 어업 외 소득을 통한 어가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 조업 구역내 부유물질 및 잡목, 생활쓰레기 제거 등 어장 환경개선으로 수생태계 보호,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 조업능률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8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248-6765)

- 하절기 양식장 용수부족 및 수온 상승으로 양식어류 집단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가뭄 발생 시 양식장 용수 부족 및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액화산소 공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8년도에는 내수면 액화산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0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액화산소 공급체계 구축으로 하절기 양식용수의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어류 집단 폐사를 방지하고
-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9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248-6765)

-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7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중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없었습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업 관련 토지, 어선, 어업권 양도나 증여 시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20톤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연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543백만원 감면
 - 연간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 약 11,320백만원 감면
 - 연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약 1,600백만원 감면
- ⇒ 연간 약 135억원의 어업인 세 부담 경감으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IV

Green·Safe 강원도 만들기

1.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 73
2.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74
3. 어르신들의 안전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75
4.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76
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 77
6.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이 상향됩니다. / 78
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범위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 79
8.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 80
9.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됩니다. / 81
10. 어린이집 노후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드립니다. / 82
1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미세먼지가 포함됩니다 / 83
12.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 84
13. 브롬산염(수돗물 수질기준)이 모든 수도시설에 적용됩니다. / 85

1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국토교통부 · 자체사업]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대응팀 (☎249-3826)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가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 1. 7.) 및 시행('18. 1.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란?

-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지하10~20미터(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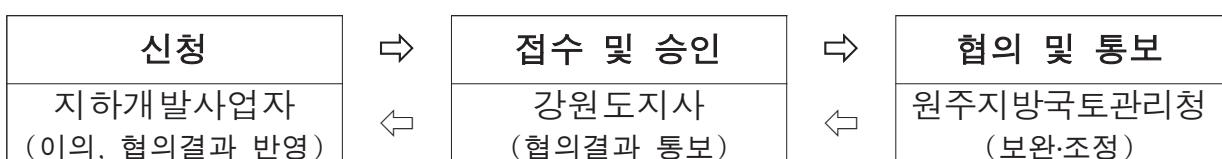
<전문기관 등록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 토질 · 지질분야 기술인력 6명 이상(특급 2, 중급 2, 초급 2)
- 지반 거동 수치해석 등 8종의 프로그램 · 장비 구비

■ 법 시행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추진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
* 입법예고 공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위원회 회부(12월), 조례안 공포 및 제정(1월)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접수 및 등록('18. 1. 1. 이후)

■ 지하안전영향평가 신청(협의) 및 승인 절차는?



* 지하개발사업자의 이의신청 시에도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

2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대응팀 (☎ 249-3827)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하여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7.1.17) 및 시행('18.1.18)

■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 확보

■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자체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리주체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유지관리계획 수립(매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실시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 준공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 공공업무시설, 아파트(5층~15층), 연립주택(660m^2 이상 4층이 하)
- $1,000\text{m}^2 \sim 5,000\text{m}^2$: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5,000\text{m}^2 \sim 30,000\text{m}^2$ 또는 11층~16층 건축물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8일

3

어르신들의 안전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 249-2511)

- 폐지 줍는 노인 및 고령부부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와 단절된 고령부부가구를 위한 강원은빛케어봉사단 구성·운영

■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관리망 구축
 -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부착물 지급 : 안전조끼, 반사경 등
 -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 강원은빛케어봉사단 구성·운영
 - 구 성 : 어르신들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어르신 100명(2인 1조)
 - 대 상 : 만 85세 이상 고령부부 가구
 - 지원내용 : 정기적인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 * 말벗서비스, 생활교육, 영양관리 등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지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폐지 줍는 어르신 : 시·군 및 읍·면·동 노인복지 담당부서
- 강원은빛케어봉사단 구성 및 운영 : 시·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3월(예정)

4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체사업]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팀 (☎ 249-2515)

- 여성의 안전한 심야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사업

■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신청방법 : 본인이 원하는 장소 도착 30분 전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로 전화 신청(033-1366)
- 이용시간 : 22:00~익일 01:00(주 5일, 3시간 근무)
- 이용대상 : 여성과 여학생
- 지원사항 : 2인 1조로 구성된 안심귀가 보안관이 귀가 동행
- 운영지역 :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시범 운영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여성 체감형 안전도시 실현
- 민·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여성 안전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18년 3월

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 생활기술팀 (☎248-6155~6)

-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농업인 스스로 실천하여 안전역량 강화 및 농작업 안전문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사업목적 : 농작업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개선 및 안전의식 생활화
- 사업규모 : 15개소, 7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개소당 50백만원
- 사업대상 :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범인, 연구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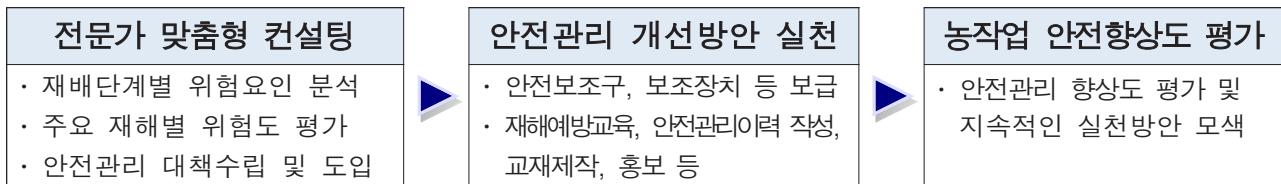
■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완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참여 농업인수가 20명 내외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맞춤형 컨설팅 : 작목별 위험요소 분석,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수립 등안전관리 개선실천 : 안전장비·보조장치 등 보급, 안전이력작성, 재해예방교육 등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가컨설팅(10~15%이내), 안전장비·보조장치(사업비의 40~70%이내) 보호구·안전교육 등 (20~50%) <p>※ 본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p>

■ 사업신청 ·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희망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심사 후 확정

■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2018년 1월

6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이 상향됩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 (☎249-3162)

-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이 상향 조정됩니다.

■ 법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 2. 27.)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하는 사설수목장림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을 국가 및 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 상한과 동일하게 적용함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호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치면적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u>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u>10만제곱미터 미만</u>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예방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묘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2018년 6월 28일

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범위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 (☎249-3162)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산림보호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법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1. 학교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시설2. 농로시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3.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 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 「방위사업법」 제3조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4. 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군사시설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2018년 6월 28일

8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 산림병해충방제팀 (☎249-3163)

- 사람이나 동물과는 달리 수목의 경우에는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제도 신설로 나무의사(국가기술 전문자격)가 정확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가 뭔가요 ?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4(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 :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 담당 (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 처방에 따른 예방·치료 담당 (약사)

■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 무 의 사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수목치료기술자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이수 기간은 미 확정)
※ 시험날짜, 양성기관 등 자세한 세부계획은 추후 공고됩니다.

■ 나무병원 운영은 ?

- 1종 나무병원 : 나무의사1인 + 나무의사1인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 2종 나무병원 :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 2종 나무병원은 5년후 폐지

■ 기존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존 자격증은 유지되며(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이상 종사한 기존 자격증 보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목진료 업무가 가능하며 기간 내에 똑같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2018년 6월 28일

9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자원순환팀 (☎249-2573)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유는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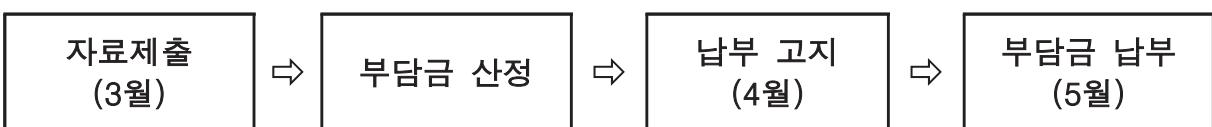
-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대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무엇인가요 ?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설정·관리
※ 대상자 : 17개 시도 및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18개업종, 2,500개소)
- 폐기물의 최종처분(매립·소각)량에 대하여 시군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부과시기 : 2019. 3.)
- 납부대상자 및 부과기관

폐기물의 종류	납부 대상자	부과기관
생활폐기물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 2018년 1월 1일

10

어린이집 노후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드립니다.

[환경부]

환경과 청정환경팀 (☎249-2243)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을 LPG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란?

- 사업비 : 3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 35%)
- 사업량 : 70대 * 시군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②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③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 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함

- 사업내용 : '08. 12. 31.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5백만원/대 지원

■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시 · 군에서 사업 공고 후 폐차 · 신차 구입확인서 등의 서류를 포함하여 시 · 군(환경부서)에 지원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주행 시 LPG차량에 비해 NOx(질소산화물)가 93배 더 배출됩니다. 따라서,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 시 어린이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노출 영향감소는 물론,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미세먼지가 포함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청정환경팀 (☎249-2243)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새로이 변경되어 포함됩니다.(미세먼지(PM-2.5), 곰팡이)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

- 다중이용시설(대합실,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시설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 새해에는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의 오염물질 권고기준에 미세먼지 (PM-2.5)와 곰팡이 항목이 새로이 추가 변경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µg/m³)	미세먼지 (PM-2.5) (µg/m³)	곰팡이 (CFU/m³)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2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행정안전부]

수질보전과 환경시설팀 (☎249-2592)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위생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1. 1. 시행) 개정
-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취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며, 과거의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휴지통을 비치하는 관습을 폐지하여 이용자의 위생편의 증진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교육 시설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적용(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어떻게 달라지나요?

- 휴지통 제거 * 홍보영상 보기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동영상 뉴스→홍보영상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되,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쓰레기통을 비치
-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여자화장실만 해당)
 - 대변기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버리기 쉬운 곳에 설치

<안내 스티커>	<위생용품 수거함>
 <p>내부 스티커(남자화장실용)</p>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3

브롬산염(수돗물 수질기준)이 모든 수도시설에 적용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상수관리팀 (☎249-2575)

-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 중 브롬산염이 모든 수도시설로 확대 적용되어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하루 처리 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만 적용되던 수돗물 수질 기준항목인 브롬산염이 2018년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확대 적용
 - 적용대상 : 광역·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 허용위해수준 :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동안 매일 2ℓ의 물의 마실 때 10만명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항목	수질기준	적용대상		검사주기	시행시기
브롬산염	0.01mg/L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5만 톤/일 이상	1회/월	'17.1.1일부터
			5만 톤/일 미만		'18.1.1일부터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1회/년	'18.1.1일부터

- 수도사업자는 모든 수도시설에 대해 2018년부터 브롬산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V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 지원

1.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가전제품을 지원합니다. / 89
2.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행복을 추구합니다. / 90
3.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합니다. / 91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92
5. 재활치료는 이제 재활의료기관에서 받으세요. / 93
6. 마을기업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94
7. 도민 누구나 돈을 버는 모바일 에너지사업이 시행됩니다. / 95
8. 강원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설치합니다. / 96
9. 올림픽·패럴림픽 여행주간 ‘평창여행의 달’이 운영됩니다. / 97
1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확대됩니다. / 98
11.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99

1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가전제품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책팀 (☎ 249-3093)

- 탈북 후 하나원의 보호와 교육을 마치고 강원도를 거주지로 선택하여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가전제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배경은 무엇인가요?

-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보호와 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충분한 생활물품이 구비되지 않은 채 정착생활을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이런 이유로 초기 정착물품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누구에게, 어떤 물품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원도에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기존 세대 편입자 제외)
- 지원물품 : 시중 1백만원 상당의 500L 냉장고 1식
※ '17. 10. 롯데하이마트와 해당 물품을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
- 지원시기 : 2018년 1월부터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가전제품 지원을 통해 초기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정주의식을 가진 강원도민으로 성공적 정착 가능
- 강원도와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2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행복을 추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세정과 세정팀 (☎249-2319)

- 세무사들의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무 상담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를 추구합니다.

■ 마을세무사란?

-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 단,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이 어려운 주민

■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시·군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리플렛, 마을세무사 명함, 관련기관(행정안전부, 강원도청,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 담당 마을세무사 확인 후 이용 가능

상담 방법

-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 * 이와 병행,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시간에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면담

- * 장소는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

3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 249-2240)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방식과 명절수당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지원내역이 무엇인가요?

● 대체교사 지원

- 보육교사가 연가 및 보수교육 참석 시, 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최대 5일 파견

- 지원사유 : 상시(보수교육, 연가, 건강검진 등), 긴급(가족상, 질병 등)

● 명절수당 지원 : 도내 모든 어린이집 교직원에 명절수당 지원

- 지원시기 : 설·추석 각 2회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지원 방식 : 3단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 시·군 →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지원 방식 : 2단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수요 신청 시 즉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절수당 단가 : 7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절수당 단가 : <u>10만원</u>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체교사 지원 : 어린이집에서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Fax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명절수당 :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기간 근무자에 모두 지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665)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확대 추진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권리옹호로 자립생활 실현 촉진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만 18세 이상)에게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등 구입비를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지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확대	▪ 3개소(원주, 강릉, 속초)	▪ 4개소(1개소 추가 설치)
▪ 거주시설 퇴소 자립 정착금 지원	▪ 1인당 5,000천원 (시범운영)	▪ 1인당 6,500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 건축허가 및 건물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전수조사 6,600개소 *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신청

5

재활치료는 이제 재활의료기관에서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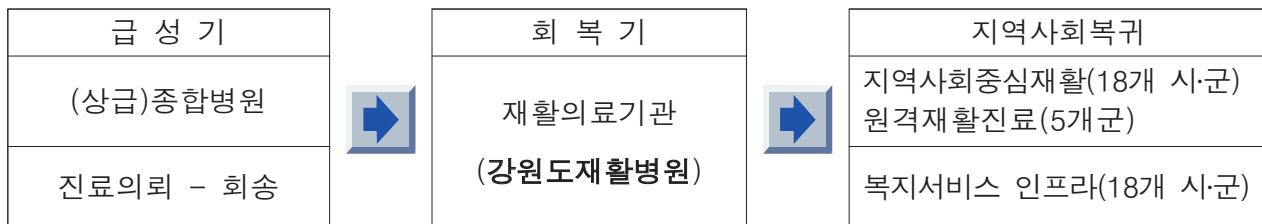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249-2392)

- 기능회복시기에 재활의료기관에서의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생활복귀를 목적으로 한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재활의료기관이란?

-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병원급 7개 재활의료기관을 1차 선정하여,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인프라로서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재활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됨

■ 재활의료 전달체계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회복기 시기에 질환과 상태에 따라 최대 180일~27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여 충분한 입원치료기간이 보장됨
-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활전문치료팀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적절히 수행함
-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 1. ~ 12.

6

마을기업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249-3229)

- 성장이 교착상태에 놓인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목적은?

- 공동체성, 잠재적 가능성, 자립경영의 의지는 있지만 교착상태에 놓인 마을기업에 사업개발 유도 및 성장의 디딤돌 마련

■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신규, 2차년도)이 종료되고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
- 사업내용 : 제품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기계 설비, 판로 개척 등
-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공동사업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8. 12. 31.
- 지원절차 : 공모(도) → 심사선정(도) → 약정체결(시군) → 지원금 지급(시군)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100)

■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도민 누구나 돈을 버는 모바일 에너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체사업]

에너지과 자원관리팀 (☎249-2968)

- 합리적으로 아낄 수 있는 전기, 모바일로 쉽게 돈을 번다.

■ “아낀전기거래사업”, “우리집전기저금통” 란 무엇인가요?

- “아낀전기거래사업”은 전기소비자(건물, 공장, 기관, 학교 등)가 특정 시간(규정 : 연 60시간 이내, 실제 : 과년도 평균 연45회)에 전기를 아끼기로 계약을 맺어 전력거래소에 아낀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우리집전기저금통”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1천 가구를 한정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로 쉽게 기기별 연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절약미션에 참여하여 성공하면 캐쉬나 포인트 등으로 받아 돈을 베는 사업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홈페이지(www.gwdr.or.kr)에서 사업별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와 이행과정을 알려주세요

- “아낀전기거래사업”은 전문기업이 연락드리고 컨설팅을 통해 감축 가능한 용량을 산출하여 등록시험을 통해 참여하게 되므로 감축 방법은 각 시설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감축요청 이행 시 가상발전소로 인정해서 정산금을 받게 됩니다.
- “우리집전기저금통”은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 1천호를 한정하므로 선정과정을 통해 개별 연락한 후 기사가 방문하여 무상으로 IoT 기기를 설치해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집 전기저금통 모바일 앱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확대 시행)

8

강원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설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산업과 정보통신팀 (☎249-3014)

- 국민생활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설치합니다.

■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란?

- 사업기간 : 2018 ~ 2024(7년간)
- 총사업비 : 1,209백만원(국비:지방비=1:1 매칭)
※ 국비 50% 지원(3년간)
- 사업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NIA)
- 추진방식 : 국비:지방비=1:1
- 사업대상 : 18시군 650대(시내버스 447, 농어촌버스 203)

■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선정) 과기정통부에서 '18년도 예산 배정과 함께 사업자 공고 및 선발과정으로 사업자 선정 → 7년간 사업 수행

■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사업시행 첫해는 시도별 각 270대 분량으로 시내버스에만 설치
- 대도시 및 시내버스 대수가 많은 순서로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순차(연차)적으로 추진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6월

9

올림픽·패럴림픽 여행주간 ‘평창여행의 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마케팅과 국내마케팅팀 (☎ 249-3343)

-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올림픽 관광객이 강원도 전역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여행주간’ 이란?

- 국내여행 신규수요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 민간기업(관광업)과 함께 추진하는 범국민 국내여행 캠페인
 - * 2014년부터 시행(2016년 명칭변경 : 관광주관 → 여행주간)
 - 광역시도 대표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점객업소 특별할인, 홍보·마케팅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 여행주간(1. 14. ~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창여행의 달(2. 9. ~ 3. 18.까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연계관광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 여행주간(4월)/ 가을 여행주간(10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 여행주간(4월)/ 가을 여행주간(10월말)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대표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 전역 주요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운영
 - 올림픽 경기관람+연계관광 팸투어, 경강선 활용 권역별 여행상품 구성 등
- (할인이벤트) 도내 주요관광지·숙박·음식 특별할인, 특별행사·이벤트
 - 주요 관광지점(한국관광 100선, 관광의 별 등) 중심 온·오프라인 이벤트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대표프로그램 정보 및 할인이벤트 쿠폰 다운로드 등
 - * 한국관광공사(<http://www.knto.or.kr>) 및 사이버강원관광(<http://gangwon.to>)

1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249-2794)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 개인당 7만원권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드려요. 1년 동안 (1. 1. ~ 12. 31.)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가맹점은 이렇습니다.

문화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화방, 서점, 사진관, 악기점, 한복점, 만화방
여행	숙박,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고속버스, 시외버스
스포츠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체육사(공, 라켓, 자전거 등 운동기구)

■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 (2017년)	변경 (2018년)
▪ 1인당 사용한도 : 6만원	▪ 1인당 사용한도 : 7만원

■ 어떻게 신청, 사용하나요?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신규신청 또는 충전 후 사용하세요.
-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구매대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하세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1월 1일

11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 (☎660-8327)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민 어촌유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우리 도에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어(예정)자에 대한 어촌지역 홍보, 각종 어업·어촌정보 제공, 체험기회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2018년부터 3년간 12억원(국비 6, 도비 6)이 투자되며 사무실 및 인력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시민 어촌유치의 전 담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귀어(예정)자가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체험, 견학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로 도시민 어촌유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 2018년 3월

VI

도민을 위한 법령 및 행정제도 개선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103
2.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위기사유가 확대됩니다. / 104
3.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 105
4. 진료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106
5.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107
6.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108
7. 중·대규모 기업이전, 신·증설 지원기준을 세분화합니다. / 109
8. 중·대규모 창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 110
9. 동물보호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 111
10.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112
11.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 113
1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이젠 쉽게 해결하세요! / 114
1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 115
1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116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249-2599)

- 부양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 원 내 용
	생계	136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80만원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94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신청	교육	226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 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부양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2017년 11월

2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위기사유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249-3697)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위기사유가 확대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이란?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7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지원 ·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등 : 21.9만원 ▣ 중중 : 34.8만원, ▣ 고등 : 42.7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주거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6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례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7년 10월)	변 경 (2017년 11월)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주소득자*에 한정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부소득자: 종전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 언제부터 시행 되고 있나요? 2017년 11월

3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 249-2393)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신규 시행됩니다.

■ 연명의료결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의 의사, 환자의 가족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함.
-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공포('16. 2.), 시행('18. 2.)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상태	확인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작성한 문서

■ 관련기관은 어디인가요?

-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기관 :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 도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기관 수요조사 중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2월

4

진료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체사업]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 249-2436)

- 휴·폐업 의료기관의 발급이 편리하도록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보급

■ 추진 배경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대부분 개설자가 보관하며, 연락 두절 시 진료기록부 발급 어려움
- 보건소에 전자 진료기록 이관 시 관련 프로그램 부재로 발급 불가

■ 변경 사항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 진료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보급 (18개 시·군 보건소)

■ 향후 계획

- 시·군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종이 진료기록 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전자파일 변환 또는 전자 기록으로 전환하도록 중·장기 홍보 및 계도

■ 기대 효과

- 휴·폐업 진료기록부 발급 처리 시간 단축 효과
- 보건소 종이 진료기록을 위한 보관 공간 및 관리 인력 해소

5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체사업]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 249-2436)

-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추진 배경

-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의 높아지는 의료서비스 제공 요구 및 의료 민원 증가

■ 변경 사항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 병원급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 추진 방법

- 의료기관 방문환자 대상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 제시, 우수의료기관 연말 표창
- 의료기관 친절 교육 및 민원 응대 교육 실시

■ 기대 효과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질 및 친절도 향상으로 환자 신뢰도 증가 및 도민 건강증진 도모

6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249-2694)

-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오·남용 방지

■ 추진 배경

- 관리대장 현장점검 등 관리만으로 유통, 사용현황 파악 불가
-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사용정보 부족

■ 변경 사항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 마약류 취급의 기록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2년)	▪ 시스템으로 보고
▪ 마약류 도·소매 판매 매월 보고	▪ 시스템으로 보고
▪ 마약 구입서 판매서 교환 및 보관	▪ 폐지

■ 추진 방법

-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출입·유통·투약·조제·반품·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시스템으로 상시 보고
- 마약류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 성명 등 보고

■ 기대 효과

- 마약류 취급정보 통합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오남용·불법사용 방지

7

중·대규모 기업이전, 신·증설 지원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 249-4924)

- 중·대규모 기업이전,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분화합니다.

■ 중·대규모 기업이전 등 특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원기준 : 고용·투자규모 별 총투자금액의 40~50%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액 : 고용 또는 투자규모에 따라 80~300억 원 한도
- 지원신청 : 투자 전 투자협약(MOU) 반드시 선행, 투자완료 후 신청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기준 세분화·조건 완화

기 준 (2017년)			변 경 (2018년)		
기준	비율	한도	기준	비율	한도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총투자의 40%	80억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총투자의 40%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총투자의 50%	10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억
상시고용 1,000명 이상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총투자의 50%	300억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150억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200억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300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기업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한 지원으로 도내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

중·대규모 창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 249-4924)

- 중·대규모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세분화·상향 조정합니다.

■ 중·대규모 창업 특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원기준 : 총투자금액의 20% 지원
- 지원금액 : 고용 또는 투자규모 별로 10~100억 원 한도
- 지원신청 : 투자 전 투자협약(MOU) 반드시 선행, 투자완료 후 신청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기준 세분화·한도 상향 조정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기준	비율	한도	기준	비율	한도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원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원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원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원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4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40억원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60억원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		60억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80억원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억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기업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한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동물보호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 249-3404)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 확대,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보호법령을 강화·세분화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추진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령명 : 「동물보호법」
- 변경내용 : 영업의 종류·관리 세분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사항 강화 등

기준 (2017년)	변경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등록제 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등록제 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생산업 신고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생산업 허가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ul style="list-style-type: none">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ul style="list-style-type: none">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장묘업자 제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안전장치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3월 22일

* 법 시행 당시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10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 249-2656)

-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허가 업종으로 신설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령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변경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및 해당 영업자 책임 강화 등

기존 (2017년)	변경 (2018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처리하는 영업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축산물에 대해 검사 의무 부여<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u>식용란 성분규격</u> 검사 실시 의무 규정 추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용란 생산자가 영업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규정 신설<ul style="list-style-type: none"><u>산란일</u>, <u>세척</u>, <u>냉장보관 여부</u>, <u>사육방식</u>, <u>산란주령</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 영업장에 출입·검사·수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입·검사·수거 가능 영업장에 <u>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u> 포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8년 4월 25일

-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11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자체사업]

지역도시과 지역계획팀 (☎249-2808)

- 그 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주기적 신고제도가 2018. 2. 4.부터 폐지됩니다.

■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란?

-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12조의 2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2018. 2. 4.부터 폐지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 주기적 신고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2016. 2. 3. 일부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적용은 2018. 2. 4.부터 시행됩니다.

■ 그럼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 존 (~ 2018. 2. 3.)	변 경 (2018. 2.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설업 주기적 신고 (매 3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모든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설업 실태조사 (매 1 ~ 2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설업 실태조사 (매 1~2년)	

■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모든 건설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던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행정적 비용을 줄이면서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확인제도는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집중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1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이젠 쉽게 해결하세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건축과 주거복지팀 (☎249-3464)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쉽게 조정·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지부(*강원권 포함)에 설치되었습니다.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심의·조정 내용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임차인, 임대인, 관련 분쟁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 가능
 - 지 부 : 서울중앙지부(132 또는 02-6929-0753), 춘천지부(251-8301)
 - 지 소 : 인제지소(463-4676), 양구지소(482-1320), 화천지소(442-6755)
 - 출장소 : 강릉출장소(645-3163), 원주출장소(748-0763), 속초출장소(636-8511), 영월출장소(373-1910)
- 비용 : 1만원 ~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면제)
- 처리기간 : 60일 이내(사안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

1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자체사업]

방호구조과 예방홍보팀 (☎249-5147)

-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에 자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기준 등을 강화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 법령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 :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 변경내용

-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함을 의무화

구 분	기 존 (2017년)	변 경 (2018년)
교육회수	▪ 영업전 1회	▪ 영업전 1회 + 2년에 1회
과 태 료	▪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200만원 이하	▪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를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시기

- 2016. 1. 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 1. 20.까지
- 2016. 1. 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장소

- 전국 소방관서, 사이버교육(Cyber.kfsa.or.kr)

● 문의사항

- 강원도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1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산개발팀 (☎660-8333)

- 2016. 12. 2.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 공포된 후, '17. 12. 3. 시행에 따른 어업허가 및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하위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각 허가 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7]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 2년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1년 → 2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1년 → 2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1년 → 2년
5.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6개월 → 1년
6.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 1년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개월 → 10개월
8.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개월 → 10개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2월 3일

